

정 관

재단법인 지구힐링 문화재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소재지)

제1항 본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지구힐링 문화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1. 본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9층 1910호 (가산동, 대륭포스트 타워5차) 일부(74.1m²)’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제1항 본 재단의 목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 재단은 쓰레기를 주위 합법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오염된 지구를 살리고 자연의 회복(Healing)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부(이하 ‘쓰레기 기부’)로 인정해 주는 것에 있다.
2.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기부’ 문화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개인, 기업, 단체 및 국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에 있다.
3. ‘쓰레기 기부’를 인증제도화 하여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및 윤리적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제3조 (쓰레기 기부의 관리)

제1항 본 재단은 전조의 ‘쓰레기 기부’를 인정하기 위해 아래 각호의 관리기준을 갖는다.

1. 회원이 쓰레기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거되도록 관리한다.
2. 쓰레기의 처리는 일반, 음식물, 재활용 등 그 종류대로 정부의 허가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처리 되도록 관리한다.
3. 적법한 쓰레기의 수집과 처리 사진을 수집수량과 함께 제출하였을 경우 ‘쓰레기 기부’로 인정한다.
4. 기부된 쓰레기는 부피 및 무게와 상관없이 수량으로 판단되며 ‘쓰레기 기부’ 사진의 공개원칙을 통해 제출된 수집수량이 자율적 감시가 되도록 한다.
5. 본 재단은 한 개의 ‘쓰레기 기부’는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인정한다.
6. ‘쓰레기 기부’가 허위사실로 발각 될 경우 인정된 기부 기록은 모두 무효화 처리하며 이로 인해 부당 취득된 보상은 전체 환수한다.

제2항 본 재단은 ‘쓰레기 기부’의 관리 및 기록을 전산화한다.

1. ‘쓰레기 기부’의 관리 및 기록 전산화에 대한 운영은 정보기록관리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4조 (쓰레기 기부의 보상)

제1항 본 재단은 ‘쓰레기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 각호의 보상을 시행한다.

1. 전조 1항에 의해 ‘쓰레기 기부’의 인정 시 기부 코인(BA Coin)을 지급한다. 단 1코인의 지급 기준 및 예외범위는 당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쓰레기 기부’ 인증제를 통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해당 현황을 공시한다.
3. 본 재단은 ‘쓰레기 기부’자가 장학금, 취업, 입학, 법률지원, 세무지원, 금융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후원한다.
4. ‘쓰레기 기부’를 한 단체, 기업, 학교 및 국가 등에 쓰레기 기부 강연 및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 받을 수 있다.

5. ‘쓰레기 기부’ 우수자의 표창 및 시상을 수행한다.

제2항 본 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쓰레기 기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목적사업)

제1항 본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쓰레기 기부’ 활동 및 지원사업
2. ‘쓰레기 기부’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지구힐링콘서트 및 페스티벌)
3. 쓰레기 관련 연구 지원을 통한 포럼 및 학회 개최
4. ‘쓰레기 기부’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 운영
5. 쓰레기 기부자 시상식, 장학금 및 금융지원 사업
6. 쓰레기 관련 간행물 제작 및 출판, 집필 활동 지원
7. 쓰레기 기부 감사 및 홍보대사 임명 및 지원사업
8. 쓰레기 기부 코인(Coin) 발급 사업
9. 특수·수중 쓰레기 등의 수거 및 처리 사업
10. 쓰레기 처리 물품 지원 사업
11.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2항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2. 쓰레기 기부 감사 자격증 발급 사업
3. 쓰레기 기부 기업의 홍보사업
4. 공연 및 전시회 기획 사업
5. 쓰레기 기부 배지판매 사업
6. 회원 및 회원사의 기부금
7. 기부물품 판매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제1항 본 재단의 회원은 본 재단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쓰레기 기부’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제1항 회원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안하여 본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회원은 이사회 의결권은 없다.

제2항 회원에게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이사회가 의결하는 정기기부금 및 제 부담금 납부

제9조 (징계) 회원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 이사장은 당해 회원에 대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회원의무의 불이행
2. 본 재단의 설립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음이 확실한 때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재단에는 아래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 이하(공동대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 이사장 및 총재로 분리 호칭함)
2. 이사 4인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하

제11조 (임원의 선임)

제1항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임원은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쓰레기 100만개 이상 기부한 자’ 또는 ‘5억 이상 출연한 자’ 중에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항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항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제1항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제1항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 직무대행)

제1항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이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제1항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항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1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항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서면결의)

제1항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명예회장·기부위원·상임위원

제24조 (명예회장·기부위원·상임위원)

제1항 본 재단에는 대외 강연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의 쓰레기 기부활동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회원 중에 명예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2항 본 재단에는 필요한 만큼의 기부위원을 둘 수 있고, 명예회장은 기부위원을 대표한다.

제3항 상임위원은 기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항 명예회장·기부위원·상임위원 선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분)

제1항 본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재단 설립 시, 그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정하여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본 재단 설립 시, 그 설립자가 보통재산으로 정하여 출연한 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수입금) 본 재단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제28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 (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편성) 본 재단의 수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2조 (결산) 본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업무보고) 본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6조 (사무국)

제1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항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 (법인해산)

제1항 본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2항 본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9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준용)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며, 이에 규정이 없을 때는 유사단체에 적용되는 관습·관행·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 기명날인) 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 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주소	날인
임동표	비공개	
김능기	비공개	
장종수	비공개	
전병호	비공개	
이예영	비공개	